

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9조(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)

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 단, 월 한도액 초과시 장기요양급여 수가 또는 쌍방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.

□ 2025.01.01. 수가 기준

등 급		2025년 수가	비고
3시간이상 ~ 6시간미만	1등급	40,650 원	○ 1일 식대 : 6,500원 - 1식 2,000*3=6,000원 - 간식 2*250= 500원
	2등급	37,630 원	
	3등급	34,740 원	
	4등급	33,160 원	
	5등급	31,580 원	
	인지지원등급	31,580 원	
6시간이상 ~ 8시간미만	1등급	54,490 원	
	2등급	50,470 원	
	3등급	46,590 원	
	4등급	45,000 원	
	5등급	43,400 원	
	인지지원등급	43,400 원	
8시간이상 ~ 10시간미만	1등급	67,770 원	
	2등급	62,780 원	
	3등급	57,960 원	
	4등급	56,380 원	
	5등급	54,780 원	
	인지지원등급	54,780 원	
10시간이상 ~ 13시간이하	1등급	74,660 원	
	2등급	69,160 원	
	3등급	63,900 원	
	4등급	62,290 원	
	5등급	60,710 원	
	인지지원등급	54,780 원	
13시간 초과	1등급	80,060 원	
	2등급	74,170 원	
	3등급	68,520 원	
	4등급	66,930 원	
	5등급	65,350 원	
	인지지원등급	54,780 원	

구분		금액(원)	내역
월 이용 한도	보험료	85%	■ 서비스 이요자의 등급에 따라 비급여를 제외한 100% 중 85%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
자부담	본인부담금	15%	■ 건강보험공단 85% 부담 / 개인 15% 부담
		6~9%	■ 의료급여수급자 · 감경대상자의 경우 ■ 건강보험공단 94~91% 부담 / 개인 6~9% 부담
		0%	■ 기초 생활 수급자 ■ 건강보험공단 100% 부담 / 개인 면제

제10조(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)

1. 신원 인수인의 권리(보호자 및 보증인)

-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②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
-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·식사·생활상담·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⑧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 운영 및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⑨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
- ⑩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·퇴소(전원)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

2. 신원 인수인의 의무(보호자 및 보증인)

- ①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·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② 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
- ③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
-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·파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3. 이용자의 의무

- ① 이용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시설 청결 의무
- ③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
-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-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

4. 이용자 구비 서류

- ① 장기요양 인정서 1부
- ②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
- ③ 복지 용구 급여 확인서 1부
- ④ 처방전과 복용 중인 약품

제11조(계약 해제)

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초래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

1.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
2.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·신체적으로 피해를 주었을 경우,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
3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